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486

제안연월일: 2025. 2. .

제 안 자: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제출) 일자	심 사 경 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4275호)	박균택의원	2024.9.25.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 회의(2025.1.1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4347호)	박주민의원	2024.9.26.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 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4. 11. 12. 자로 직접 회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4587호)	정 부	2024.10.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전체 회의(2024.1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2.17.)는 위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 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5.2.26.)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하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해당 외국인의 보호 개시 또는 보호기간 연장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를 마련하고 당사자인 외국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3. 3. 23. 선고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해당 외국인의보호에 대한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보호명령서를 발급하거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는바,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출국금지 대상에「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

불사업주를 추가(안 제4조제1항제6호)

- 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안 제63조)
 - 1)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외국인이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등으로 송환 절차가 지연되거나, 「국가보안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20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할수 있도록 함.
 - 2)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 중인 외국인의 보호기간이 2 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도록 함.
- 다. 보호해제된 외국인의 재보호(안 제63조의3 신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해제된 외국인이 도주하거나 보호 해제 시 붙인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해당 외국인을 다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호 관련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안 제66조의3 신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명령서를 발급하거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

마.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 운영(안 제66조의4부터 제66조의17까지 신설)

- 1) 외국인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계속 보호 승인 및 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 2)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고, 법무부 소속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 3) 외국인보호위원회에 그 사무처리 및 조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장 및 외국인보호 조사관을 두도록 함.

법률 제 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6.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제46조의2 중 "주거의 제한"을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등"으로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①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보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출입 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제66조의4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이 하 "외국인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보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 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보호된 사람을 보호해제하는 결 정을 한다.

제56조의9의 제목 "(이의신청 절차 등의 게시)"를 "(심사청구 절차 등의

게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의신청"을 "심사청구"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교통편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사람을 송환할 수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송환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3개월의 범위에서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9개월을 넘을수 없다. 다만, 송환하려는 사람을 9개월이 지난 후에도 송환할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3개월의범위에서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그 사람을 송환할수 있을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20개월을 넘을 수 없다.
 - 1. 송환하려는 사람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에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난민법」에 따른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출 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송환 절차

가 지연된 경우

- 2. 송환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라.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또는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를 범한 사람
 - 마. 그 밖에 공공질서나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서 살인, 상해, 강간, 추행, 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 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호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연장기간을 정해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보호자의 송환업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호자를 다른 보호시설로 이송하도록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

부터 제56조의9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3조의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외국 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상한을 넘은 경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보호위 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 하여야 한다.
 -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른 국가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입국을 거부하는 등 제63조에 따른 피보호자를 명백히 송환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보증금의 납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63조의3(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의2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보호해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다시 보호(이하 "재보호"라한다)할 수 있다.
 - 1. 도주한 경우
 - 2.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제46조제1항 각 호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이 밝혀졌거나,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제63조의2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할 때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재보호 및 그 보호해제 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63조(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63조의2를 준용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재보호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종전에 제63조에 따라 보호한 기간 및 종전에 제1항에 따라 재보호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64조의 제목 "(송환국)"을 "(송환국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출국 거부,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송환이 어려운 경우 직접 국외로 호 송하거나 선박등을 임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송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송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피보호자의 정상(情狀), 해제요청사유, 자산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

보증인의 지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아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의 일시해제를 결 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호의일시해제 결정을 받으면 그의 보호를 일시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보증금의 예치 및 주거의 제한 등 조건 부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 등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에 제6절의2(제66조의3) 및 제6절의3(제66조의4부터 제66조의17까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의2 의견진술

제66조의3(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제51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호명령서 발급
- 2.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허가

- 3. 제63조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 4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의 신청
- 5. 제63조의3에 따른 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의 신청
- 6.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제6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 제66조의4(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① 외국인 보호·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
-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66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55조(제63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업무
 - 2.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업무
 - 3.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업무
 - 4.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결정
 - 5.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 제66조의6(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무부 소속이 아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과반수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에는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 1.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4 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인 권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인보호 업

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부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 ④ 외국인보호위원회에 3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둔다. 상임위원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의임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66조의7(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상임위원 및 제66조의6제2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66조의8(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대통령 또는 법무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 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66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

(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6조의9(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이하 이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법률상담이나 조언 등 조력을 제공하는 자(이 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이거나 대리인등이었던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등과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 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6조의10(위원장) ① 위원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임명일이 빠른 상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위원의 임명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6조의11(존속기한) 외국인보호위원회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30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제66조의12(심의·의결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66조의5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호자와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호자, 관계인,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 관계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 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제5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 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출석한 피보호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수 있다.
- 제66조의13(의결정족수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④ 결정은 그 이유를 붙이고 심의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로 한다.
- 제66조의14(분과위원회)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6조의15(사무국의 설치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조사를 위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③ 사무국에 외국인보호 조사관을 두며,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66조의5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그와 관련된 업

무를 처리한다.

- ④ 사무국장 및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외국인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과 인원에 관한 구체적 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6조의16(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외국인보호위원회(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66조의17(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5조제8호 중 "제56조 또는 제63조제1항"을 "제56조, 제63조제1항·제2항 또는 제6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63조제5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이나"를 "제63조의2제4항 및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보증금의 납부 등"으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 정규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외국인보호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위원의 임명·위촉, 사무국의 설치행위 등 외국인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 제3조(출국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가 결정된 체불사업주부 터 적용한다.
- 제4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에 따라 보호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5조(보호 중인 사람의 보호기간 연장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6개월 이상 20개월 미만인 피보호자가 제6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지체 없이 제6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할 수

있다. 다만,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 1. 피보호자의 보호기간이 보호를 시작한 날부터 20개월을 넘은 경우
- 2.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이 있기 전에 본문에 따른 보호기간이 3개월을 넘은 경우
-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피보호자에 대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6개월 미만인 피보호자에 대하여 202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한경우에는 2025년 7월 31일까지의 범위에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할 수 있다.
- 제6조(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제7조(계속 보호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에 따른 피보호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보호의 일시해제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5조제1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의 일시해제 청구를 할 수 없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	제4조(출국의 금지) ①
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
	<u>주</u>
<u>6.</u> 그 밖에 제1호부터 <u>제5호</u> 까	<u>7.</u> <u>সা6ই</u>
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	
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	
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	
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강제퇴거집행 등에 대	제46조의2(강제퇴거집행 등에 대
한 특칙) 지방출입국·외국인관	한 특칙)
서의 장은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	
국인이 같은 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	

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제62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제65조에 따라보증금을 예치시키고 <u>주거의 제한</u>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제55조(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①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 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 쳐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인정되면 결정으로 보호된 사람의 보호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결정에 앞서 필요하면 관계인의

제56조의9(이의신청 절차 등의 게 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7 -1 41	ง -า	-1 -1	
		<u>주거의</u>	제한,	<u>정기</u>	上
고,	신원보	보증인의	지정	등	
		•			

제55조(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①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보호에 대하여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을 거쳐 제66조의4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이하 "외국인보호위원회"라한다)에 보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따른 심사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기 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보호된 사 람을 보호해제하는 결정을 한 다.

제56조의9(심사청구 절차 등의 게 시) ----- 장은 제55조에 따른 보호에 대 한 이의신청, 제56조의6에 따른 면회등 및 제56조의8에 따른 청 원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 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다.

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지방 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강 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 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 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할 때 그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 는 3개월마다 미리 법무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 면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 야 한다.
-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 <u>심사청구</u>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의 보호) ① 지방출입국 · 외국 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통편이 확보되 지 아니하<u>는 등의 사유로 그 사</u> 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 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 ②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송환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송 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3개 월의 범위에서 미리 외국인보호 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이 다른 국가로부터 입국이 거부되는 등의 사유로 송환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의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보호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보호하는 경우에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9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송환하려는 사람을 9개월이 지난 후에도 송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3개월의 범위에서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20개월을 넘을 수 없다.

1. 송환하려는 사람이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이후에 「난민법」 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 나 「난민법」에 따른 법무부장 관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 서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소송 을 제기하여 송환 절차가 지연 된 경우

- 2. 송환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오
 - <u>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u> 죄를 범한 사람

- 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 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 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 람
- 라. 「형법」 제2편제1장 내란 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4 장 국교에 관한 죄 또는 제5 장 공안을 해하는 죄를 범한 사람
- 마. 그 밖에 공공질서나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서 살인, 상해, 강간, 추행, 강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 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호기간 연장을 승인하 는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연장기간을 정해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피보호자의 송환업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법무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호자를 다른 보 호시설로 이송하도록 지방출입 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제63조의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 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기 간의 상한을 넘은 경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외국 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u>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지체 없</u> 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른 국가가 강제퇴거명령 을 받은 사람의 입국을 거부하 는 등 제63조에 따른 피보호자 를 명백히 송환할 수 없게 된 경 우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 우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 원보증인의 지정, 보증금의 납 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 일 수 있다.

제63조의3(보호해제된 사람의 재 보호)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 서의 장은 제63조의2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보호해제된 사람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다 시 보호(이하 "재보호"라 한다) 할 수 있다.

- <u>1. 도주한 경우</u>
- 2.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제46조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함이 밝혀졌거나,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제63조의2제4항에 따라 보호 를 해제할 때 붙인 조건을 위 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재보호 및 그보호해제 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63조(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63조의2를 준용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재보호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종전에 제63조에 따라 보호한 기간 및 종전에 제 1항에 따라 재보호한 기간을 포 함하지 아니한다.

제64조(<u>송환국 등</u>)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의 출국거부, 교통편 미확보 등 의 사유로 송환이 어려운 경우 직접 국외로 호송하거나 선박등 을 임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64조(<u>송환국</u>)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직 권으로 또는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 한다)의 청구에 따라 피보호자의 정상(情狀),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청구,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할 수 있다.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송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송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직 권으로 피보호자의 정상(情狀), 해제요청사유, 자산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 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 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아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의 일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 결정을 받으면 그의 보호를 일시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의 예치 및

<신 설>

주거의 제한 등 조건 부가에 관 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 등의 절 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절의2 의견진술

제66조의3(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
당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
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
어야 한다.

- 1. 제51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 른 보호명령서 발급
- 2.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 호기간 연장 허가
- 3. 제63조제1항에 따른 강제퇴 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 4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의 신청
- 5. 제63조의3에 따른 보호해제 된 사람의 재보호 및 보호기간

	<u>연장 승인의 신청</u>
	<u>6.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호 일</u>
	시해제의 취소
<u><신 설></u>	제6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u><신 설></u>	제66조의4(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
	<u>치) ① 외국인 보호·재보호에</u>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
	위원회를 둔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그 권한
	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
	<u>행한다.</u>
<u><신 설></u>	제66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
	관 업무)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u>1. 제55조(제63조제5항에서 준</u>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
	른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업
	<u>무</u>
	2.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
	간 연장 승인 업무
	3.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재보
	호에 대한 이의 심사 및 보호

기간 연장 승인 업무

- 4.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결정
- 5.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보호위 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제66조의6(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
 - 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위원 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무부 소속이 아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하며, 외부위원에는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
 - ②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함하여야 한다.

 1.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 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 하였던 사람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 체에서 인권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인 보호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 부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

<신 설>

촉한다.

④ 외국인보호위원회에 3명 이 내의 상임위원을 둔다.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6조의7(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상임위원 및 제66조의 10 위원장, 상임위원 및 제66조의 10 위원에 제6호까지의 구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66조의8(위원의 해임 또는 해 촉) 대통령 또는 법무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 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66조의9제1항 또는 제2항 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 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 오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6조의9(위원의 제척・기피・회 피)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제66 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 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인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법률상담이나 조언 등 조력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이거나 대리인등이었던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등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 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 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신 설>

<신 설>

회피하여야 한다.

제66조의10(위원장) ① 위원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임명 일이 빠른 상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위원의 임명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의11(존속기한) 외국인보호 위원회는 2025년 6월 1일부터 2 030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66조의12(심의·의결 등) ① 외 국인보호위원회는 제66조의5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호자와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호자, 관계인,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 관계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 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 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 우편 등 간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술심 리에 출석한 피보호자는 변호사 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본 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6조의13(의결정족수 등) ① 외

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 ③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④ 결정은 그 이유를 붙이고 심의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로 한다.
- 제66조의14(분과위원회) ① 외국 인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 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6조의15(사무국의 설치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조사를 위하여 외국인보호위

<신 설>

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 를 처리한다.
- ③ 사무국에 외국인보호 조사관을 두며,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66조의5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그 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 ④ 사무국장 및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외국인보호 업무에 관한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과 인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66조의16(벌칙 적용 시 공무원의제) 외국인보호위원회(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 탁)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생략)

-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7. (생략)
 - 8. 제51조제1항·제3항, <u>제56조</u> 8. ----- <u>제56조</u>, 호 또는 일시보호된 사람으로 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 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에 도주한 사람(제93조의2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한이나 그 밖의 조건을 위 3제2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

본다.

제66조의17(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탁)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 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95조(벌칙) -	
.	

- 1. ~ 7. (현행과 같음)
- <u>또는 제63조제1항</u>에 따라 보 <u>제6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u> <u> 3조의3제1항</u>-----
- 9. 제63조제5항에 따른 주거의 9. 제63조의2제4항 및 제63조의

반한 사람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
	<u>정, 보증금의 납부 등</u>